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구윤철 (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주류 중개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 규정이 미비하여, 무면허 주류 중개 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시 벌금 상당액을 도·소매 행위와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비고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비고

1. 위 제2호바목에 따른 벌금상당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. 다만, 주세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3배의 금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.

가. 주류·밀술·술덧을 무면허로 제조한 경우 및 무면허로 제조된 주류를 도매행위 또는 중개행위를 한 경우

주류별 제조하거나 판매한 양			
	탁주	위스키 및 브랜디	그 밖의 주류
50 ℓ 이하	50만원	200만원	100만원
50 ℓ 초과 100 ℓ 이하	100만원	300만원	200만원
100 ℓ 초과 500 ℓ 이하	200만원	700만원	400만원
500 ℓ 초과 1,000 ℓ 이하	300만원	1천만원	600만원
1,000 ℓ 초과 3,000 ℓ 이하	500만원	2천만원	1천만원
3,000 ℓ 초과 5,000 ℓ 이하	1천만원	3천만원	2천만원
5,000 ℓ 초과 10,000 ℓ 이하	2천만원	3천만원	3천만원
10,000 ℓ 초과	3천만원	3천만원	3천만원

- 나. 주류제조면허자가 제조한 주류를 매입하여 주류도매면허 없이 도매행위를 하거나 주류중개면허 없이 사업자 간 중개행위를 한 경우

: 가목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

다. 주류소매면허(의제판매면허를 포함한다)를 받지 않고 소매행위를 하거나 주류중개면허 없이 사업자와 소비자 간 중개행위를 한 경우

: 가목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

2. 주류제조자가 직매장, 하치장, 그 밖의 명칭으로 직접 경영·관리하는 주류판매자에 대해서는 주류제조자에 대한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	
연 락 처	(044) 215 - 4333